

힘이되는 평생진구, 보건복지부



보건복지부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「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」 공포 알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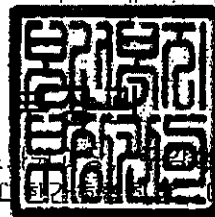
1.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부응하는 우수한 의료기사등의 인력 배출을 위하여 국가시험 과목을 직무 중심의 통합과목 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「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」을 공포(시행일 : 2014년 1월1일부터)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. 아울러, 해당 협회에서는 소속 회원(비회원 포함)에게 동 내용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, (재)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는 국가시험 응시 관련 대학(교)에 동 개정 내용을 알리시어 의료기사 등으로서 종합적인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충실히 진행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110215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안(공포용).hwp

붙임 : 110215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안 신규조문대비표(공포용).hwp 끝.

보건복지



수신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, 보건복지콜센터상, 의료정책과, 보건강과장,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간호협회장, 대한의사총연합회장

주무관	서윤숙	약무사무관	오정현	보건의료정책과	전결 02/17
협조자				장	박인석
시행	보건의료정책과-592	(2011. 02. 17.)	접수		
우	110-793	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8층 보건복지부	보건의료정책실	보건의료정책과	/ http://www.mw.go.kr
전화	02-2023-7339	전송 02-2023-7303	/ hjjw@mw.go.kr		/ 대한민국개발도

도와줘요 고마워요 희망의 전화 129